

이사회 규정

제 정:2015.1.2

한솔제지주식회사

이사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법령 또는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임 무)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 4 조 (구 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 5 조 (의 장)

1.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2. 의장이 유고시에는 사장(또는 부사장), 전무이사 및 의장이 지정한 상무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2 장 회의소집 및 진행

제 6 조 (종류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나눈다.
2. 정기이사회는 2개월마다 1회 개최한다.
3. 임시이사회는 긴급한 부의사항이 있을 때에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 7 조 (결의방법)

1.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써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2 이상의 수로 한다.
2.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는 이사 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이사회 결의에 있어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5.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참석한 것으로 본다.

제 8 조 (부의사항)

이사회는 부의할 사항은 별표(1)로 이를 지정한다.

제 9 조 (위임)

1.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2. 대표이사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범위내에서 소관 업무 담당이사에게 해당사항의 집행을 대행시킬 수 있다.

제 10 조 (사후승인)

1.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이를 집행하고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전말을 보고하고 추인을 얻어야 한다.
2. 전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책임을 진다.

제 11 조 (이사 아닌자의 출석)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사 아닌 자도 회의에 출석하여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 12 조 (간사)

1. 이사회에 간사를 두고 인사(총무)부서장이 이에 임한다.
2. 간사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각 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의 사무전반을 담당한다.

제 13 조 (의사록)

간사는 이사회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이사와 그 반대이유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14 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월 2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이사회 부의안건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가. 주주총회의 소집
- 나.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

- 가. 중장기 경영계획
- 나. 연간 경영계획
- 다. 연간 투자계획
- 라. 연간 투자계획 이외의 100억원 이상의 투자
- 마. 신규사업
- 바. 단일규모 100억원 이상의 프로젝트 계약
- 사. 재무구조 및 공시, 신고관련 사항(별표2)

3. 조직에 관한 사항

- 가. (집행)임원조직의 제정 및 개폐
- 나. 지점, 공장, 사업소의 설치 및 폐합

4. 집행임원에 관한 사항

- 가. 집행임원의 직위 위촉 및 해촉
- 나. 집행임원 관련 인사규정의 제정 및 개폐

5. 인사, 노무에 관한 사항

- 가. 직원의 모집 및 훈련의 기본방침
- 나. 급여체계, 상여 및 복리후생

6. 이사회 자체에 관한 사항

- 가. 대표이사의 선정
- 나. 이사의 직위위촉 및 해촉

7. 기 타

- 가. 중요한 소송의 제기과 화해에 관한 사항
- 나. 기타 법령, 정관에 정한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별표(2) 재무구조/공시/신고관련 사항

- 이사회 위임사항은 대표이사 및 재무담당임원 책임하에 시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그 내용을 추인받도록 함.
- 위임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 승인 후 시행토록 함. 단,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발생시에는 추인받는 것으로 하되, 사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내역	위임여부	
	사전승인	위임
I 재무구조		
1. 자금차입		
1) 여신한도의 연장 및 변경		●
2) 회사채 발행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회사채발행 대표이사 위임	●	
3)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	
4)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단기차입금의 차입	●	
2. 주식		
1) 증자 (실권주처리 포함) 또는 감자 (이익소각 포함)	●	
2)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	
3) 배당 (금전,주식,기타의 재산)	●	
4)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부여취소 등	●	
5) 주권의 액면분할 및 병합	●	
6) 해외증권의 주권상장 및 상장폐지	●	

내역	위임여부	
	사전승인	위임
Ⅱ 공시규정		
1. 주요사항 공시 (한국거래소 공시규정 제 7조)		
1) 매출액의 100분의 5 (대규모법인은 100분의 2.5)이상의 공급계약 체결 및 해지, 제품의 수거 및 파기, 영업 및 가동 중단 및 폐업	●	
2)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의 신규시설투자	●	
3)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유형자산 취득 또는 처분	●	
4) 자기자본의 100분의 5 (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출자 및 출자지분 처분	●	
5) 자기자본의 100분의 5 (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채무면제 및 채무인수, 담보제공, 채무보증	●	
6) 자기자본의 100분의 5 (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선급금지급, 금전의 가지급, 금전대여, 증권대여	●	
7) 자기자본의 100분의 5 (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소송	●	
8) 자산재평가 결정	●	
9) 회생절차 신청, 기업구조개선약정 체결	●	
10) 영업 양수도, 회사의 합병 및 분할, 물적분할, 간이합병, 소규모합병	●	
11) 풋백옵션 계약	●	
2. 공정거래 공시 (공정거래위원회 공시규정 제4조)		
1) 특수관계인과의 50억원 이상의 자금, 유가증권, 자산거래	●	
2) 동일인 및 친족출자 계열회사와의 50억원 이상의 상품, 용역거래	●	
Ⅲ 기타		
1. 주요주주 및 이사와의 거래 (금전거래, 증권거래, 부동산거래, 담보제공, 채무보증, 상품용역거래)	●	